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201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향, 임소라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보경, 김백근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부산시 기장군 F 전 536㎡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27,366,188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213,752원, 원고 B에게 8,152,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들은 소외 E(이하, 채무자)으로부터 소외 G가 운영하는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권유받아 원고 A는 2015. 4. 9.부터 10. 27.까지 합계 2억 6천만 원, 원고 B는 2015. 8.경부터 20. 27.경까지 합계 9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 7.경까지 배당금 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E을 고소하였다.

(2) 채무자 E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41호 등으로 '2014. 12. 26.부터 2017. 4. 20.까지 합계 25,47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5.부터 2015. 12. 10.까지 합계 770,000,000원을 송금받아 G 및 다른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7.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G는 사기 등으로 같은 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 원고들은 2017. 12. 7. 각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E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 A에게 81,180,000원, 원고 B에게 34,41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19. 10.경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처분행위 등

(1) E은 자신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F 전 5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및

2017. 11. 15. 각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E은 2017. 12. 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 이를 원인으로 2017. 12. 27.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행행위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9. 10.경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은
2015.경 이미 E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7. 12. 7.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형사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인 2017.
12. 22.에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2천만 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 원금
115,590,000원 및 앞서 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수령한 260억 원 가량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반환채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 E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적극재산]

부산 북구 I아파트 J호 1억 2천만 원

2016년식 그랜저 1,8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8,200만 원(피고들 매수가격)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무자 E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중개인을 통하여 시세대로 매수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나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들은 채무자 E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들의 모친 L이 사망하여 2017. 11.경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자 매수할 땅을 알아보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인근의 중개사무소 K은 2017. 10. 23.경 E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아 열 번 이상 소개를 하였으나 이는 산 위에 있는 맹지라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피고들은 2017. 12. 22. K의 중개로 채무자 E과 사이에 매매대금 8,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200만 원, 2017. 12. 27. 잔금일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7,200만 원 상당은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2. 27. 말소되었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7. 1. 1.경 127,000원/㎡, 2018. 1. 1.경 140,000원/㎡이고, 피고들이 매수한 가격은 이에 따른 가격 2017년 68,072,000원, 2018년 75,040,000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⑥ 중개인 K은 채무자 E으로부터 약정 중개수수료 738,000원과 양도소득세를 합하여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선주